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

의안 번호	76
----------	----

발의년월일 : 1992년 6월 18일

발의자 : 임병섭의원의외7인

###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1조 2항이 개정됨에 따라 의회에서 회의종료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7일이내에 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던 것을, 회의종료후 2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임시회의록의 발간·배부시기를 변경코자 함.

### 2. 주요골자

당 의회회의록 발간 및 보존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자구정정을 위하여 발간하는 임시회의록의 발간·배부 시기를 회의종료 후 4일이내에 발간 배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회의종료 후 10일 이내에 발간·배부 하도록 개정코자 함.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예규제

호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입시회의록) 제1항 중 “발간하여 4일이내에”를 “회의종료후 10일 이내 발간하여”로 하고, 동조 제4항중 “특별위원회”를 “위원회”로 “제2항 및 제3항을” “제1항,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4조(임시회의록) ①본회의 회의록은 미리 임시회의록을 발간하여 4일이내에 배부한다.</p> <p>②——③(생략)</p> <p>④특별위원회의 임시회의록을 발간할 때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①..... .....회의 종료후 10일이내 발간하여... .....</p> <p>②——③(현행과 같음)</p> <p>④위원회.....제1항, 제2항 및 제3항.....</p>